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역 간 여가 격차 해소 〉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256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역 간 여가 격차 해소(안 제15조의2 신설 등)	2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구자근의원 등 11인

나. 제 출 일 : 2026. 6. 15.

다. 회부연월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여가정보 제공, 여가교육의 실시, 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여가시설, 여가프로그램 및 여가전문인력 등 여가 인프라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지역 간 여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가정책 추진 시 지역 간 여가 격차 해소를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여가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의 균형 있는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지역 간 여가 격차 해소(안 제15조의2 신설 등)

개정안은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지역 간 여가 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가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8. (생략) <u><신설></u> 9. ~ 11. (생략) ③ ~ ⑤ (생략) <u><신설></u>	제7조(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8. (현행과 같음) <u>8의2. 지역 간 여가 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u> 9. ~ 11.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u>제15조의2(지역 간 여가 격차의 해소)</u>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여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u>

현행법¹⁾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여가 활성화 정책의 목표와 방향, 여가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여가시설의 확충,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여가정보 제공, 여가교육

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7조(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을 포함한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가 활성화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여가환경 조사·분석
4. 여가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5. 여가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여가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여가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8.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9. 여가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 여가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9조(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여가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10조(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활동, 여가시설, 여가교육 및 여가프로그램 등 각종 여가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여가교육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학교 및 관련 시설 등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의 내용 및 방법, 관련 시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과 공간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여가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이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실시, 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등 여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여가시설, 여가프로그램 및 여가전문인력 등 여가 인프라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어 지역 간 여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전국의 문화기반시설 3,337개 중 1,231개(약 36.9%)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전국 문화기반시설 현황(개)]

지 역	국립 도서관	공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 센터	문예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집	문학관	총 계
수도권	4	589	300	109	59	91	66	10	3	1,231
지 방	0	707	618	181	165	190	166	35	44	2,106
총 계	4	1,296	918	290	224	281	232	45	47	3,337

자료: 「2025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박물관 평균 지표 현황]

지 역	박물관 수	1개관 당 평균			
		종사인력 수	학예인력 수	소장자료	연 관람인원
서울	137	25.07	8.88	39,455	135,925
부산	32	13.63	5.09	14,195	84,790
대구	18	11.11	4.17	27,314	73,957
인천	31	10.48	4.19	7,695	87,253
광주	13	15.00	6.23	20,444	98,567
대전	16	8.94	3.19	29,996	43,783
울산	10	9.50	2.60	15,780	71,319
세종	6	5.17	3.17	42,997	50,896
경기	132	9.32	3.58	8,387	58,232
강원	97	7.89	1.74	6,636	59,832
충북	41	7.22	2.39	8,519	33,624
충남	64	12.73	4.47	14,730	118,736
전북	45	13.27	3.51	16,419	80,154
전남	65	9.98	2.78	8,810	58,324
경북	74	13.80	4.22	14,183	73,244
경남	76	8.75	2.75	10,629	60,937
제주	61	14.66	1.80	26,501	147,716
수도권	300	16.63	6.06	22,503	96,711
지방	618	11.01	3.14	14,286	78,133
총 계	918	12.84	4.09	16,971	84,204

자료: 「2025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미술관 평균 지표 현황]

지 역	미술관 수	1개관 당 평균			
		종사인력 수	학예인력 수	소장자료	연 관람인원
서 울	43	13.19	6.42	1,130	182,062
부 산	9	19.67	8.67	530	42,758
대 구	6	17.00	9.17	1,002	118,758
인 천	7	7.29	2.86	1,888	9,777
광 주	14	11.07	4.00	866	17,373
대 전	5	11.80	3.80	885	44,747
울 산	1	21.00	11.00	234	105,941
세 종	-	-	-	-	-
경 기	59	21.41	6.51	835	42,011
강 원	19	6.68	2.95	813	44,502
충 북	11	7.55	3.82	674	40,487
충 남	11	5.27	2.82	646	22,541
전 북	21	6.95	2.48	302	26,863
전 남	41	4.27	1.90	1,349	21,124
경 북	12	5.25	2.17	564	44,944
경 남	10	11.90	4.40	880	29,829
제 주	21	9.57	2.29	444	52,981
수도권	109	17.26	6.24	1,019	95,191
지 방	181	8.21	3.29	796	36,406
총 계	290	11.61	4.40	880	58,501

자료: 「2025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기반시설의 수도권 쏠림으로 지역의 문화생산·여가활동 등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국립예술단체 및 기관의 지역 이전 등 지역문화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수립·추진²⁾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지역 간 여가 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가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³⁾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지역 간 여가격차 해소에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간 여가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임.

2) 「지역문화균형」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 ① 국립예술단체·기관 지역 이전 및 협력모델 재구축, ② 국립문화기관 지역 분관 확대 및 법인형 운영모델 개발, ③ 문화도시 3.0 추진, ④ 신 광역관광 개발 및 지역 생활인구 확대, ⑤ 중앙-지역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 등
자료: 「대한민국 문화정책 대전환 ‘문화한국 2035’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5.3.6.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문 의 처
02)6788-5376